

심사기준조회

개최일/시행일	2007-08-09	일련번호	01-01	관련근거	보험급여팀-2555호
구분	행정해석	심사지침개최일			
제목	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우리부에서는 고시 제2007-53호('07.6.27) 및 보험급여팀-2150호('07.7.9)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고, 이 경우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 또는 지시기록지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 양식의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나, 중재적 시술시 유도목적인 경우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경우에도 판독소견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등을 포함하여 기재(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의원명칭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없음					

